


  
**해외석유정책**

# 중국의 육상유전개발 개방과 법적제도

##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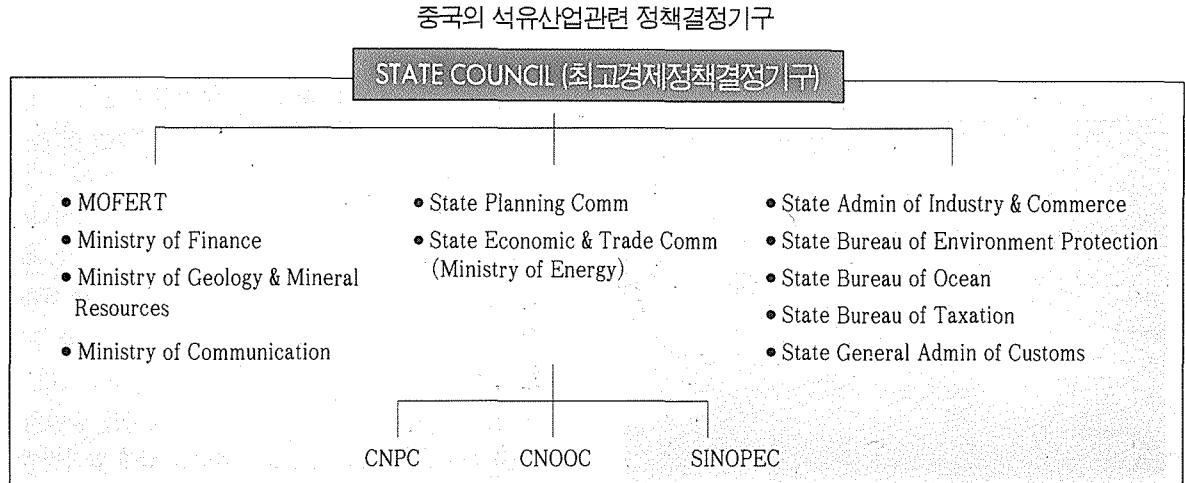
국은 최근 육상유전의 개발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法과 稅제도를 갖추었다. 육상유전 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는 지난 '82년에 개방된 해상유전개발 관련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

육상유전개발의 개방은 지난 '94년 5월 중국 정부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을 당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미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과 국내석유생산의 침체에 기인하여 석유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남부지역을 필두로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 및 수송부문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수입원유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입금지조치가 혼란에 빠진 국내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한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외국자본가들에게 재확인한 바 있다. 동시에 수입금지조치는 급증하는 석유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생산을 증대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것이 외국자본의 육상유전개발 참여에 보다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육상유전 개발의 전기

육상유전개발의 외국기업 참여는 지난 93년 2월 state council에 의해 남부 11개 省으로부터 북부 10개 省의 12개 지역에 걸쳐 허가되었다. 타림분지의 남동부 7만2천여 평방킬로미터 지역도 새로이 개방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타림분지는 총 56만평방킬로미터 넓이의 중국 최대의 퇴적분지이다. 중국 정부는 이 곳의 석유매장량이 중국 전체 매장량 100억톤의 약 7분의 1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타림분지에서는 '93년 4월 이후 5개의 대형유전과 16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존 구조가 확인되었다.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관리에 의하면 타림분지의 원유생산이 '95년까지 10만7천 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8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동분지의 개



발을 위해 약 25억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3년 3월에 CNPC가 주관한 타림분지의 합작 개발 입찰에는 17개국으로부터 67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이 입찰에서 엑슨, 스미토모 그리고 *Indonesia Petroleum Company* 콘소시엄이 CNPC와 함께 타림 분지내 *Qiemo County*의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이어서 '94년 2월에 있은 타림분지내 9천8백여 평방킬로 미터지역에 대한 2차 입찰에서는 *Agip*사가 이끄는 콘 소시엄이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2차 입찰에서는 21만 6천평방킬로미터 지역에 대한 탐사권도 포함돼 있는데, 입찰 서류에 의하면 이 곳의 매장량은 석유 62억톤 그리고 가스 8천억 입방미터로 평가되고 있다.

### 석유기관

중국석유산업은 대형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93년에 인민의회에서 통과된 조직합리화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권한과 의무를 정부기구의 3 각축인 *state Planning Commission*, *Oil & Gas Administration Office*, *Oil & Gas Exploration Office* 등에 이양하였다. *Ministry of Foreign Trade & Economic Corporation*(MOFTEC)은 외국기업의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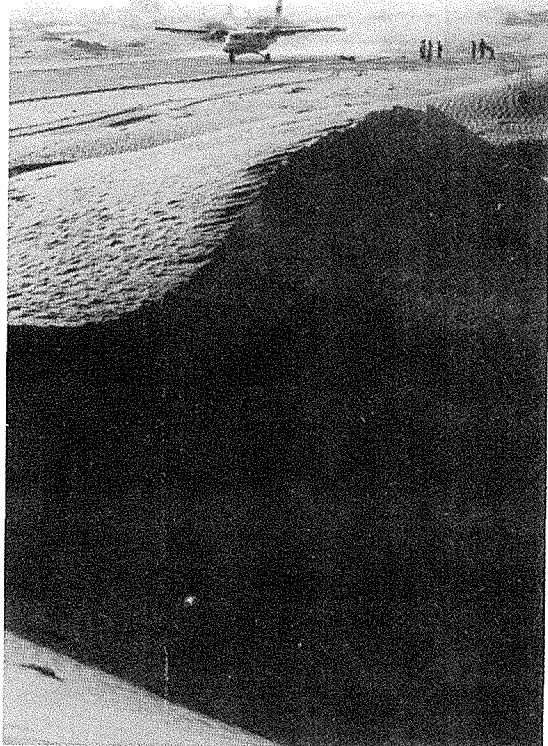
유개발 및 생산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외국참여자의 계약 승인권도 갖고 있다.

지난 88년 前 석유산업부에 의해 설립된 CNPC는 육상 석유 및 가스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CNPC가 육상 석유 및 가스전 개발의 95퍼센트 이상을 관장하는데 비하여 해상 석유 및 가스전의 개발은 *China National Offshore Oil & Gas Corporation*의 소관하에 있다. CNPC의 자회사인 *China National Oil & Gas Exploration & Development Corporation* (CNODC)는 입찰과 계약의 협상 및 체결, 이행에 이르는 모든 세부 사항을 관장한다.

### 법적제도

중국에서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 생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93년 10월에 제정된 「대륙석유자원개발에 있어서 대외국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동 규정은 82년 1월에 제정된 「해상석유자원개발에 있어서 대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모두 31개조로 구성 되어 있는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① 육상유전의 합작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총칙



타임분지내 티클리마간 시막 유전 틈사

- ② 외국참여사의 권리와 의무
- ③ 사업활동 지침
- ④ 분쟁 해결
- ⑤ 규정위반시의 처리

## ① 총 칙

이 규정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의 상호교환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외국자본의 투자,

이윤획득, 그리고 기타 합법적인 권리등은 중국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보호받을 것임이 약속하고 있다. 대신 협작개발, 생산에 참여한 외국기업은 중국의 관계법과 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관계정부당국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참여기업의 투자금액이나 이익을 보호할 것임을 보장하고 있다. 단 공공 및 사회의 이익과 필요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외국기업에 속하는 개발 및 생산 자산을 회수할 수 있으나 상용하는 보상이 있을 것임이 명기되어 있다.

*State Council*은 협작 개발 생산 지역을 승인하며, *MOFTEC*는 *State Council*의 위임을 받아 협작방법을 결정하고, 필요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협작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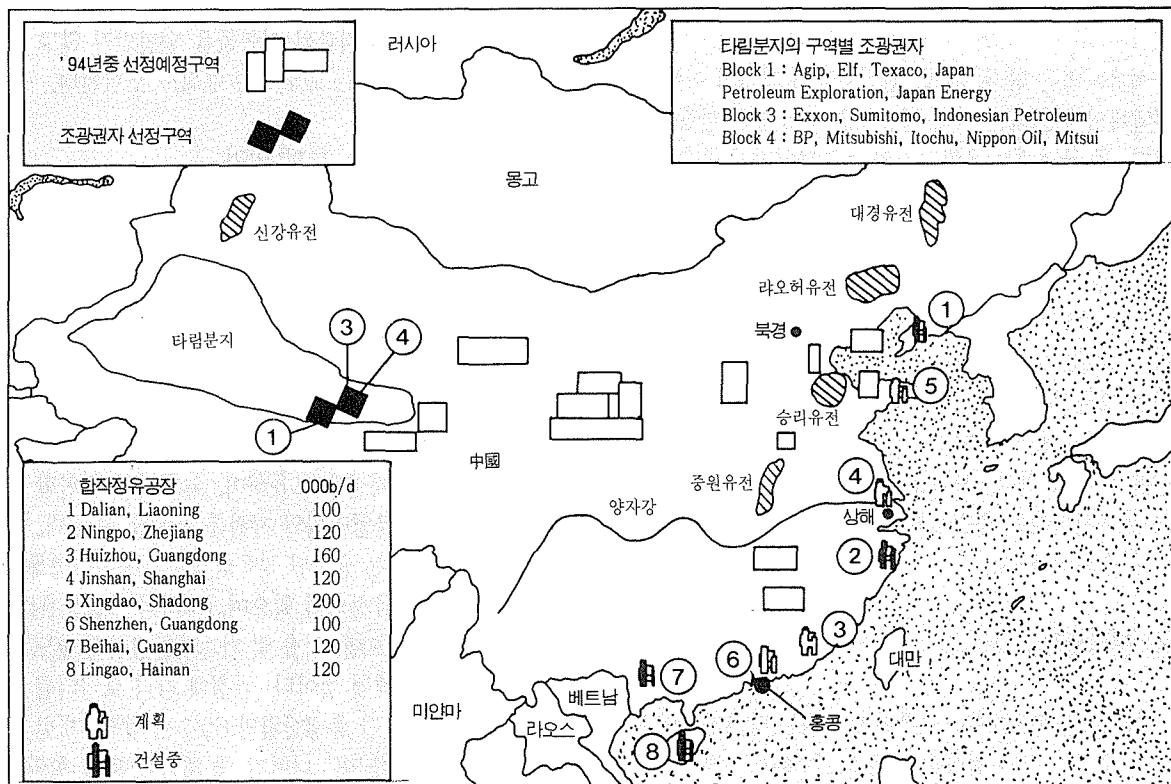
*CNPC*는 *CNODC*의 조력을 받아 육상유전의 협작개발에 관한 협상, 계약 체결 그리고 시행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CNPC*는 *State Council*에 의하여 협작개발이 승인된 지역내에서 외국기업의 투자관련사항에 관하여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외국기업들은 규제안에서 사업활동에 어느 정도의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CNPC*는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외국기업과 개발, 생산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른 중국 또는 외국기업과 동일지역에 대한 개발, 생산활동 또는 경제적, 기술적 협력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② 외국참여사의 권리와 의무

외국기업은 해당지역내에서 개발활동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한다. 상업성 있는 석유 또는 가스전이 발견되면 외국기업은 *CNPC*와 협작투자하여 공동개발한다. 외국기업은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CNPC*가 개발권을 인수할 때까지 개발, 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외국기업은 투자자본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계약조항에 따라 생산된 석유로부터 과실을 거둘 수 있다. 외국기업은 생산분배계약에 따라 분배

## 중국 석유산업의 외국자본참여 현황



받은 석유와 규정 및 계약 한도내에서 구매한 석유는 중국 밖으로 수출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투자자본과 이익 그리고 기타 합법적인 사업활동에 의하여 거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만일 외국기업이 분배 받은 석유를 중국에서 판매하고자 할 때 CNPC는 이를 구매한다.

외국기업은 중국내에서 외환거래가 허가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계약 이행에 있어서 첨단기술과 경영관리기법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기술을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인의 채용비율을 점차 늘려야 한다. 외국기업은 중국내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계약내에서의 사업활동 상황을 정확하고, 지체없이 CNPC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 통계 그리고 샘플 등의 기초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와 샘플 및 기술, 경제, 재무, 그리고 경영관리에 관한 상황을 CNPC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전의 생산활동이 종료되면 계약 수행 중 구매 또는 건설한 자산일체를 계약에

서 미리 합의한 보상가격에 따라 CNPC에게 인도한다.

### ③ 사업활동 지침

석유사업은 탐사, 개발, 생산활동과 계약의 이행 범위내에서 관련되는 기타 활동으로서 규정에 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는 운영권자와 보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운영권자는 요구사항에 따라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 및 생산활동은 먼저 *State Council*의 위임을 받은 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필요 물품, 원재료, 부품, 수송수단, 그리고 사무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조건이 비슷하다면 중국산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운영권자 및 보조사업자는 중국인과 중국기업에 채용 및 용역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권자와 보조사업자는 환경보호 및 안전에 관한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④ 분쟁해결

「규정」내에서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당사자간의 분쟁은 우선 조정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조정과 협상을 거부하거나 실패할 경우 계약내 중재조항이나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한다. 중재는 중국 중재기구나 다른 중재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계약내에 중재조항을 수용치 않거나 중재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을 중국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 ⑤ 규정 위반시의 처리

「규정」 위반시에는 경고를 받거나 일정 기간내에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석유사업활동은 정지된다.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받게 될 것이다. 규정

위반사항에는 이미 합작, 탐사 지역내일지라도 승인받지 않은 탐사 또는 생산활동이 포함되며, CNPC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개발계획 승인 이전의 탐사 또는 생산활동, 그리고 자료와 기록들을 승인받지 않고 해외로 판매, 반출 또는 교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모델계약

1차 입찰의 모델계약은 탐사기간을 8년으로 하고, 이것을 다시 4년, 2년, 2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탐사기간은 불충분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모델 계약은 생산기간을 15년까지로 하고 일정 조건하에서 계약생산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CNODC는 만장일치를 요하는 합동관리위원회와 함께 광범위한 통제권을 보유하며, 외국기업이 원할 경우 생산활동의 운영권자의 지위를 인수할 수 있다.

모델계약에서는 생산된 석유의 5%를 통상산업통합세로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나 사실상 94년 1월에 철회되었으며, 석유 및 가스개발생산의 별도 부가세 체제로 대체될 것이다) 규정에 따라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 연간 총생산량의 60%는 탐사, 개발 및 운영비로서 인정되며, 나머지 중 계약에 의해 합의된 부분(생산이 증가하면 체증하도록 되어 있음)은 중국 정부의 몫이고, 또 그 나머지는 참여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가스에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나 수반 가스이거나 비수반가스이거나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CNODC는 개발에 있어서 51%까지 지분참여토록 되어 있다. 모델계약은 이밖에 계약자가 중국 세법과 규정에 따라 조세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税

「규정」은 육상유전개발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중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세는 다음과 같다.

## ① 소득세 (Income Tax)

외국기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사업활동, 그리고 중국내에서 기타 다른 소득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석유자원의 합작개발, 생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지분원유를 분배받을 때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소득금액은 동질원유의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정당하게 정하여진 가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발, 생산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용세율은 30%이며 3%의 지방세가 추가된다. 만일 개발, 생산 지역이 경제특구에 해당될 경우 15%의 우대세율을 용 받을 것이다.

## ② 자원세 (Resource Tax)

'94년 1월 1일부터 천연자원의 생산에 참여하는 사업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천연자원세 짐정규정이 발효되었다. 원유에 대해서는 톤당 8.3 人民幣, 천연가스는 천입방미터당 2.15 人民幣의 천연자원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 물량의 산정에 있어서

① 납세의무자가 판매를 위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생산할 때에는 판매된 량을 기준으로 하며

② 납세의무자가 자가소비를 위하여 과세 대상 물건을 생산할 때에는 과세 대상 물량에 포함된다.

한편 천연자원세의 감면 및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생산과정에 있어서 난방 및 유정 건설에 사용된 원유

② 탐사 또는 생산 과정중 납세의무자가 사고 또는 천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당한 경우

③ 기타 State Council에서 정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판매 대금의 회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용도의 성격이 변한 시점을 기준일로 한다. 납세자는 대상 물건의 개발,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세무관서로 한다.

그러나 State Council은 최근 중국-외국·합작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천연자원세의 징세를 일시 정지한다는 고지를 발표하였다. 대신 아래에 언급하는 로얄티 만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 ③ 로얄티

지난 90년 1월 15일에 발효된 육상유전의 합작개발에 있어서 로얄티 지불에 관한 잠정규정에 의하면 중국의 육상 유전에서 석유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중국 및 외국기업은 로얄티를 지불도록 되어 있다. 로얄티는 각 유전으로부터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1년간

원유 로얄티 비율

연 生 산 량	로 양 티 %
~ 5만톤 미만	0
5만톤 이상 10 "	1
10 " 15 "	2
15 " 20 "	3
20 " 30 "	4
30 " 50 "	6
50 " 75 "	8
75 " 100 "	10
100 " ~	12.5

천연가스 로얄티 비율

연 生 산 량	로 양 티 %
~ 1억 입방미터미만	0
1억 입방미터 이상 2 "	1
2 " 3 "	2
3 " 4 "	3
4 " 6 "	4
6 " 10 "	6
10 " 15 "	8
15 " 20 "	10
20 " ~ "	12.5

총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로얄티는 현물로 지불되며, 그 비율은 표와 같다.

외국계 운영권자는 분기별로 생산량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분기경과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로얄티는 연간 단위로 계산되며 분할하여 선납한다. 분납시기는 세무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얄티는 운영권자에 의해 원천징수되어, CNODC로 이관되며, CNODC가 세무관서에 납부할 책임을 진다.

#### ④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는 생산을 위해 사용된 양과 로스량을 제외하고 실제 생산량에 대하여 5% 비율로서 현물로 부과된다. VAT로 납부된 석유는 나머지 석유와 함께 판매되며, 판매가격은 먼저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유를 수출할 때에는 VAT를 환급받지 못한다.

#### ⑤ 원천과세

세는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해외 송금된 세후이익은 원천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로얄티, 렌탈비 그리고 기타 수수료의 지불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과 관계회사에 지불된 이자비용은 원천과세의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그러한 비용지출에 대한 원천과세 일반세율은 20%이다. 그러나 대부와 관련하여 외국계에 지불되는 이자비용과 '95년 이전에 중국회사와 체결된 신용 또는 무역 계약에 따라 지불되는 금액은 '83년에 제정되어 이후 개정되어온 세규정에 따라 10%로 감면된 원천과세율을 적용받는다.

### 결 론

「규정」은 육상유전의 개발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촉

진시키기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하려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이미 앞서 마련된 해상 석유개발에 관한 규정과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한 「규정」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이익획득을 인정하고 과실의 송금을 자유화하고 있다. 외국기업은 개발지역에서 배타적 지위를 갖는다.

한편 「규정」하에서 중국정부는 여러 중요한 면에서 강력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산 장비와 재료의 우선 구입과 중국 인력의 고용 요구 등은 육상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밀접하게 규제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중국장비와 인력의 우선권 부여는 외국회사들에게 적정한 장비와 숙련된 인력의 확보에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과거 해상석유개발 계약에 있어서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중국기업과 함께 용역 및 조달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육상유전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편법이 등장할 것임은 의심할 바 없으며, 「규정」의 유효성이 시험받게 될 것이다.

중국인력의 훈련과 기술의 이전 또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다. 외국기업들은 훈련 및 기술이전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규정」의 제정과 타립분지 및 다른 육상유전의 개방으로 중국의 석유생산이 가속화될지는 여전히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타립분지의 隔地性, 가장 유망한 지역은 외국기업에게 개방되지 않은 점, 계약상의 통제조항들, 그리고 규정 조항등의 여러 불리한 조건들로 인하여 보다 많은 외국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석유순수입국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국내석유생산을 증대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며, 중국정부도 이 과정에서 외국석유회사들의 참여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에 지워지는 통제조항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자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鄭元俊 옮김) (Petroleum Economist '94. 10)